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14. 9. 15(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8. 22

나. 제안자 : 이용범 의원 외 3인 (찬성자 5인)

다. 회부일자 : 2014. 8. 22

라. 상정일자 : 2014. 8. 29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0년 광주아시안경기대회 이후 마케팅 권리를 조직위원회가 인수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쿠웨이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체결한 마케팅권리 양도협약에 따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OCA에 인수금을 지불하고 마케팅권리를 인수하였음.
-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OCA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로서 인수금에 대

한 과세는 OCA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나, OCA 현장 및 개최도시계약서에서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하여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마케팅권리에 대한 법인세(15%) 및 부가가치세(10%)에 대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OCA의 소득(인수금)에 부과하는 과세는 OCA에서 부담하여야 하지만, OCA현장 및 개최 도시인 우리 시와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따라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해서 세금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있어 OCA대신 조직위원회에서 약 233억원의 인수금을 대리 납부해야함.
- 이에 2013년 12월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4년 2월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세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조속히 법안심사가 이루어져 마케팅 권리 인수금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임.

나. 주요내용

- 인천AG조직위원회가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체결한 마케팅권리 양도 협약에 따라 OCA에 지급한 마케팅권리 인수금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심사하여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제안배경

-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마케팅 권리 양도계약을 체결¹⁾하여 조직위는 OCA에 인수금(60.4백만\$)을 지불하고 마케팅권리를 인수하였음.
-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OCA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로서 인수금액에 대한 과세는 OCA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나, OCA헌장²⁾ 및 개최도시 계약서³⁾에서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하여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마케팅권리에 대한 법인세(15%) 및 부가가치세(10%)에 대하여 조직위원회가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규정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⁴⁾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4. 2.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세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마케팅 권리⁵⁾의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를 근거로 조직위원회는 민간기업이 아시아경기대회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조직위원회에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됨. 이렇게 발생된 마케팅 수익금의 일부는 조직위원회와 OCA간 체결한 마케팅 권리 사용계약에 따라 OCA에 배분하여야 함.

1) '10. 11. 26, 인천시장-조직위원장-OCA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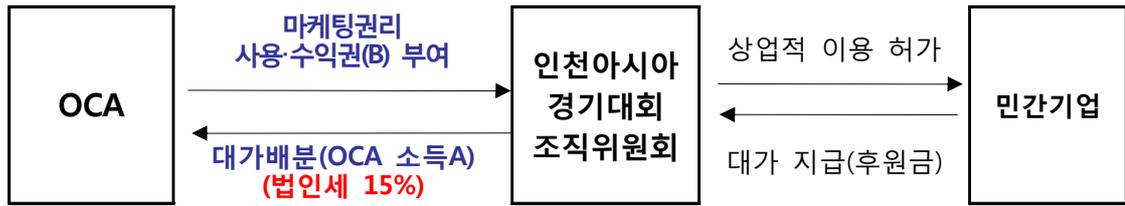
2) OCA헌장 제66조의 세칙5 : 조직위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수익의 면세를 보장한다.

3) 개최도시계약서 제33조(2007. 4월) : 조직위는 대회의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이 면세임을 확인해야 한다.

4) 동 개정안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국내 조직위원회가 원천징수하여 납부(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마케팅권리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면세를 하려는 것임.

5) 국제경기기구는 국제경기대회를 광고·방송·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설립된 조직위원회(내국법인)은 국제경기기구에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게 됨. 이와 같은 국제경기대회의 상업적 이용 권리를 일반적으로 마케팅 권리라고 함.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케팅 권리 관련 사업구조】



- 이 경우 외국법인인 OCA가 마케팅 권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내국법인인 조직위원회에게 부여한 대가로 받은 배분금(A)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OCA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또한 OCA가 조직위원회에 마케팅 권리 사용·수익권(B)를 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그러나 국제경기기구는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제 9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마케팅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인 조직위원회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또는 대리납부)하여야 함.
- 아시안게임이 국가적 행사임에도 조직위원회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대회준비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조직위원회에게 세제지원을 하더라도 그 지원액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이 국고손실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면 조직위원회의 잔여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에 따라 세 부담으로 인하여 조직위원회 운영경비가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부산아시안게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 부산AG조직위는 마케팅 권리를 인수하지 않고, OCA가 대행사를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발생한 수익금은 OCA와 조직위가 공동관리하였음. 대회 종료 후 정산 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공동관리금액에서 납부한 후 상호 배분하였음.
- OCA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 OCA와 여러 차례 협상을 추진하였지만, OCA측이 지난 부산AG시 부산조직위가 임의로 세금을 제하고 수익금을 배분한 것에 대해 강한 불신이 생겨 OCA헌장과 개최도시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할시에는 대회를 취소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임.
- 개최도시 계약서 작성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 유치활동 당시 OCA측이 부산AG 사례를 들며, 계약서상에 면제 사항을 넣을 것을 주장하여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

5. 토론요지

- 찬성 : 7명
(이한구 · 박영애 · 장현근 · 공병건 · 임정빈 · 조계자 · 황홍구 의원)
-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건의안 1부. 끝.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경기장의 국고지원 문제 등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과 성원으로 각종 난관을 극복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45억 아시아인의 축제“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온 힘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인천광역시는 아시아경기대회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세금 문제로 인하여 또 다시 크나큰 역경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국제경기대회의 광고·방송·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마케팅 권리를 OCA에서 조직위원회가 인수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OCA와 체결한 마케팅권리 양도협약에 의거 인수금을 지불하고 마케팅 권리를 인수하였습니다.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원래 OCA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대가로서 OCA의 소득(인수금)에 대한 과세는 OCA에서 부담하여 왔으나, OCA현장 및 개최도시와의 계약서 조항에 따라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해서 면세를 받고 있어 OCA소득(60.4백만 달러)에 대한 법인세 140억원과 부가가치세 93억원을 합한 총 233억원의 세금을 조직위원회가 대리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12월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면세규정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4년 2월 해당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세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이대로라면 대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국제경기대회의 마케팅 방식이 OCA 대행사에서 조직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대두된 사항으로 조직위원회의 성격상 과거 세금을 낸 전례가 없다는 점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면 조직위원회의 잔여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적인 큰 행사인 만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경기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감안하여 법률 개정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 8월 5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신 만큼 과거 치러졌던 그 어느 경기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대회운영으로 인천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45억 아시아인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마케팅권리에 대한 감면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법안심사가 이루어져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 8. .

인천광역시의회